

지역주택조합 바로알기

2022. 11.

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축과

지역주택조합 바로알기

본 내용은 평소 지역주택조합에 대하여 문의(민원 포함)가 많은 사항 및 '2022년 복구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'에 따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 되어 해운대구 현황을 반영한 자료입니다.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이해를 돕기 위하여 법령을 요약하여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리며, 자세한 내용은 「주택법」 [법제처(<http://www.moleg.go.kr>)]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(기타 문의: 부산 해운대구 건축과 ☎ 051-749-4604)

목차

0. 지역주택조합 바로알기(요약)	1
1. 지역주택조합이란 무엇인가요?	3
• 지역주택조합이란	4
• 조합원 자격	4
• 추진 절차	5
2. 지역주택조합!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?	6
1) 토지소유자	
• 재개발재건축과 다릅니다.	7
• 지주조합원이란 용어에 현혹되지 마세요.	7
• 조합설립동의서는 조합 가입신청서가 아닙니다.	8
• 동의서 작성·제출 후 철회는 매우 어렵습니다.	8
• 토지소유자 유의사항 요약	8
2) 조합원(조합 가입 신청자)	
• 과장·과대광고에 주의하세요.	9
• 조합가입계약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달라고 요구하세요.	9
• 조합 가입계약서 작성 전에 '잠시 멈춤'하세요!	10
• 조합 가입신청 30일 이내에는 청약 철회가 가능합니다.	10
• 조합원(조합가입자)은 조합운영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	11
• 지역주택 조합원은 자격요건을 유지해야 합니다.	13
• 조합가입자 유의사항 요약	14
3) 조합 및 모집주체(발기인 및 업무대행사)	
• 업무대행자의 실적보고서 제출	15
• 조합임원(또는 발기인)의 회계서류 보관 의무	15
• 조합임원(또는 발기인)의 실적보고서 작성	16
• 조합임원(또는 발기인)의 '연간 자금운용 계획 및 자금집행 실적' 제출	16
• 조합원 모집광고 준수	17
• 조합운영 관련 자료의 공개	18
• 주택조합사업 관련 자료의 정보공개	19
• 모집주체의 설명의무	20
• 주택조합의 해산	21
• 주택조합의 회계감사	22

3. 주요 위반 사례	23
1) 사업추진 단계	
• 사례1. 조합원 모집신고 전 조합원을 사전에 모집한 ○○조합	24
• 사례2. 사전계약 혜택을 부여할 것처럼 홍보한 ○○조합	24
• 사례3. 토지소유자를 협박한 ○○조합	25
2) 조합(추진위원회) 운영 과정	
• 사례1. 조합가입 계약서에는 무보수... 실제로는 조합임원에게 3백만원의 보수를 지급한 ○○조합	25
• 사례2. 조합원 모집광고 준수사항을 위반한 ○○조합들	26
• 사례3.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자료를 인터넷에 공개하지 않은 ○○조합들	27
• 기타 위반사례	27
4. 주택법 주요사항	29
5. 자주 묻는 질문	35
• 현재 시점의 토지사용권원(=토지동의율) 및 소유권 확보현황을 구청에서 알 수 있나요?	36
• 토지의 사용권원이란 무엇인가요?	37
• 모집신고 수리된 조합은 안정성이 있는 것 아닌가요?	37
• 모집공고문이 구청 홈페이지에 게시되던데 구청에서 사업을 보증해주는 것 아닌가요?	37
• 모집신고가 수리된 사업은 확정된 사업인가요?	37
• 지역주택조합 사업 성공 가능성 및 추진기간은?	38
• 조합설립동의서를 작성해달라고 하는데 작성하면 주택조합에 가입되나요?	38
• 조합 탈퇴 시 전액 환불가능한가요?	38
•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이후에도 조합원은 부산·울산·경남에 계속 거주해야 하나요?	39
•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신청일 이후 일반분양주택에 당첨되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지?	39
6. 해운대구 지역주택조합 현황 (2022. 10. 31. 기준)	40

지역주택조합 바로알기(요약)

지역주택조합이란

- 주택법령에 따른 무주택자(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소유자 포함)인 세대주가 주택마련을 위한 조합을 결성, 조합이 주체가 되어 주택을 건설하고 공급받는 제도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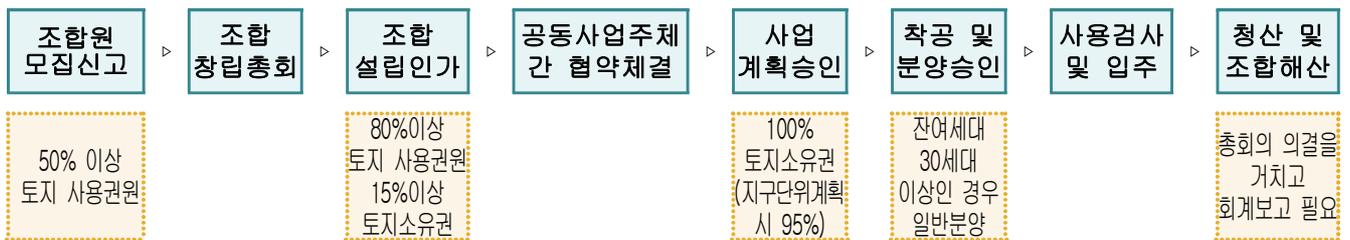
지역주택 조합원 자격

-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되려면 **3가지** 요건을 **모두** 갖춰야 함.

1	<p>‘조합설립인가 신청일’ 부터 조합주택의 ‘입주가능일’ 까지</p> <p>①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의 세대주 또는</p> <p>②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하여 주거전용면적 85㎡ 이하의 주택 1채(당첨자 및 이를 승계한 자를 포함)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</p>
2	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부산울산경남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람
3	본인 또는 배우자가 같은 또는 다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거나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닐 것

☞ 구체적인 사항은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21조(조합원의 자격) 확인

지역주택조합 추진 절차



주요 피해 사례

- 확정되지 않은 사실에 근거한 **허위·과장 광고**
 - 불확실한 사업계획과 사업비 등을 근거로 동호수 지정, 확정 분양가 제시
 - 대형건설사를 내세워 시공사가 확정된 것처럼 홍보
 - 대지사용동의율 및 토지매입 현황 과장 홍보
(실제 토지매입 계약금만 지급 후 토지매입 완료된 것처럼 홍보)
- 계약해지 및 탈퇴 불가로 인한 금전 피해

유의사항

-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조합을 결성하여 조합이 사업부지를 매입하여 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으로서 **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조합 가입자 본인에게 있음**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- 조합원 모집 시 홍보하는 **사업계획은** 확정된 사항이 아니며, 인·허가 과정에서 **변경될 수 있습니다.**
- 사업과정(토지매입, 공사시행, 건축 규모결정 등)에서 사업비가 증액될 경우 조합원의 **추가 부담금 발생 요인이 많습니다.**
- 조합의 토지확보 과정에서 토지소유자가 **과도한 비용을 요구**하거나 의도적으로 **'알박기'**를 시도할 경우 **사업비가 무한대로 증가**되어 추가 부담금이 발생되거나 **사업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**
- 토지사용권원과 토지소유권확보,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등 **사업 과정이 매우 어렵고** 각종 분쟁으로 **사업기간이 장기화** 되거나, **조합이 해산**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.
- 사업 장기화에 따른 추가 부담금 상승 및 조합내부 분쟁 등으로 인한 **정신적·금전적 피해는** 고스란히 **조합원들에게 돌아가므로** 조합 **가입에 신중**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주택법 개정에 따라 주택조합 설립이전 단계에서의 관리·감독이 강화되었으나, **모집신고가 수리되었다는 것이 곧 사업의 안정성을 담보하여 주는 것은 아닙니다.**
- **동·호수 배정**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이후 가능합니다.
- **시공사 선정**은 조합이 설립되어 총회를 거쳐야 결정될 수 있습니다.
- **해약 시 환급 관련 절차와 위약 규정**(업무추진비는 환불 불가, 계약금의 10%를 위약금으로 변제 등)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**가입계약서 및 규약의 내용을 확인**하여 불합리한 조항이나 문제점 등이 있는지 반드시 가입 전에 확인이 필요하고 조합원의 권리를 보장 받도록 하여야 합니다.
- 지역주택 조합원은 **조합설립 신청일부터 입주 가능일까지 조합원 자격요건**(세대주 및 무주택 등)을 계속해서 **유지**해야 합니다.

1

**지역주택조합이란
무엇인가요?**

📖 지역주택조합이란?

- 주택법령에 따른 **무주택자**(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소유자 포함)인 **세대주가** 주택마련을 위한 **조합을 결성**, 조합이 주체가 되어 주택을 건설하고 공급받는 제도임.

재개발·재건축과는 무엇이 다른가요?

- ❖ 재개발·재건축은 해당사업부지 내 토지·건물의 소유자들로 구성되어 사업을 진행하는 반면, 지역주택조합은 일반적으로 토지 소유자가 아닌 무주택자 등이 모여 사업을 진행하면서 토지를 확보해가는 사업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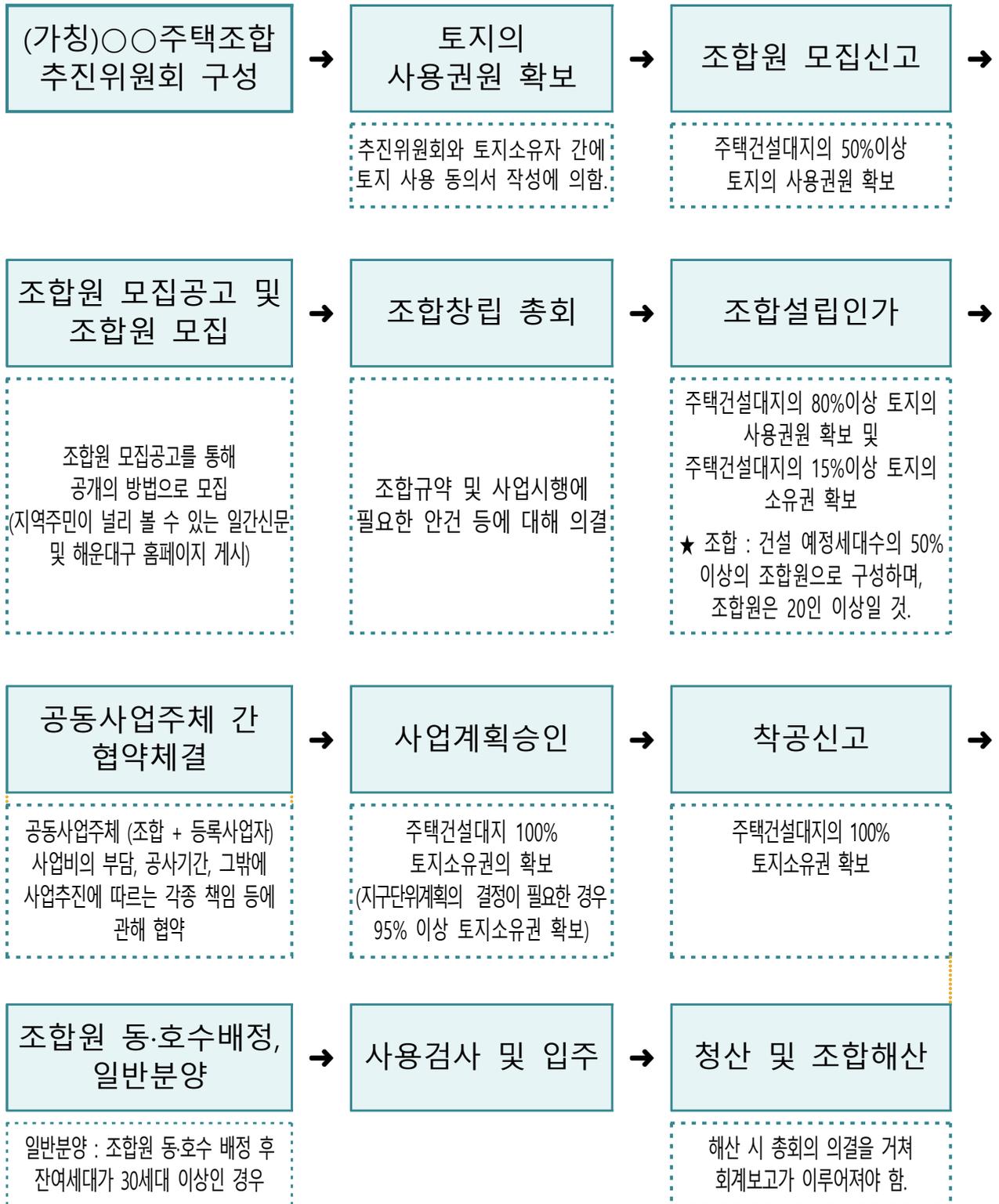
📖 지역주택 조합원 자격

-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되려면 **3가지** 요건을 **모두** 갖춰야 함.

1	<p>‘조합설립인가 신청일’부터 조합주택의 ‘입주가능일’까지</p> <p>①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의 세대주 또는</p> <p>②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하여 주거전용면적 85㎡ 이하의 주택 1채(당첨자 및 이를 승계한 자를 포함)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</p>
2	<p>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부산·울산·경남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람</p>
3	<p>본인 또는 배우자가 같은 또는 다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거나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닐 것</p>

☞ 구체적인 사항은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21조(조합원의 자격) 확인

📖 지역주택조합 추진 절차



※ 상기 내용은 일반적인 추진 과정과 관련사항을 간략히 설명한 자료입니다. 자세한 내용은 주택법령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

지역주택조합!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?

1. 토지소유자
2. 조합원 (조합 가입 신청자)
3. 조합 또는 모집주체(발기인 및 업무대행사)

1 토지소유자

📖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재개발·재건축과 다릅니다.

- 재개발·재건축은 토지 등 소유자들이 모여 개발하는 사업인 반면 **지역주택조합**은 **토지소유자 아닌 자**들이 모여 **토지를 확보**해가며 **진행**하는 사업입니다. 결국 토지소유자는 자신의 토지를 조합에 팔고 나가야 합니다.
- ※ 토지소유자가 무주택 세대주 등 조합원 자격요건을 갖출 경우 추후 해당 지역의 지역주택조합원 공개모집 시 지역주택조합원으로 가입 가능하나, 주택조합사업은 조합원이 주체가 되어 진행하는 사업으로 가입 시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📖 ‘지주조합원’ 이란 용어에 현혹되지 마세요.

- ‘지주조합원’은 주택법에는 없는 말입니다. 주택조합(추진위원회)에서 토지사용승낙 또는 매입을 위해 **일반 조합원보다 저렴한 조건으로 가입을 유도**하는 경우가 있으나, 조합원 별 사업비 분담 등은 조합설립 전 조합총회에서 결정되며 주택조합원은 무주택 세대주 등의 요건을 반드시 갖추어야 하므로 **신중한 판단이** 필요합니다.
- 또한, 모집신고 및 모집공고 전에 토지소유자와 ‘조합가입의향서’ 또는 ‘청약신청서’를 작성하여 주택조합원 가입을 받는 경우가 있으나 이것은 엄연한 **불법**입니다.

조합설립동의서는 조합 가입신청서가 아닙니다.

- 주택조합원 모집신고 및 조합설립 시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해야 하며, 대부분의 지역주택조합(추진위원회)은 토지 소유자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사용을 허락하는 '토지사용승낙서' 또는 '조합설립 동의서'를 통해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.

동의서 작성·제출 후 철회는 매우 어렵습니다.

- 토지소유자가 토지사용승낙서 또는 매매계약서 작성 후 구청에 철회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하지만 해당 서류는 조합(추진위원회)과 토지소유자 간에 계약관계에 따라 작성 및 제출한 서류로 그 철회에 관해서는 동의(계약) 당사자인 조합(추진위원회)과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. 조합(추진위원회)에 철회 요청 시 거부하는 사례가 많으니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.
- 토지사용승낙서 등 작성할 경우에는 내용(동의내용, 동의자, 동의서 사용자 등)을 반드시 확인하고 매매 등 권리에 대한 제한 여부, 승낙서 철회 가능 여부 등도 확인해야 합니다. 또한 추후 동의 내용 등 확인을 위해 동의서의 사본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.

토지소유자 주의사항 요약

- ❖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재개발·재건축과 다르며, 토지소유자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.
- ❖ 토지소유자 만의 특별한 혜택은 보장될 수 없습니다.
- ❖ 조합설립동의서는 조합원 가입신청서가 아닙니다.
- ❖ 동의서 작성·제출 후 철회는 매우 어렵습니다.

2 조합원 (조합 가입 신청자)

📖 과장·과대광고에 주의하세요.

- ‘토지의 사용권원’은 토지 사용에 대한 허락이지 소유권 확보가 아닙니다! 토지의 사용권원(= 토지 동의율)을 부풀려서 설명하는 경우가 많으니 해운대구청 홈페이지 모집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.
☞ 모집 공고문 확인 : 해운대구청 - 공개 - 새소식 - 고시공고
- 동.호수 배정 및 분양가 확정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이후에 가능합니다.
- 시공사 선정은 조합이 설립되어 총회를 거쳐야 결정될 수 있습니다.
☞ 아파트 브랜드명이나 시공사명을 조합원 모집 및 홍보에 사용하도록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이지 시공사가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!
- 사업과정(토지매입, 공사시행, 건축규모 결정 등)에서 사업비가 증액될 경우 조합원의 추가 부담금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조합원 모집 시 현수막(전단지)을 거리 곳곳에 도배하여 광고하고 있으니, 과장·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바랍니다.
☞ 모집주체(조합 또는 업무대행사)는 불법 광고물 과태료에 대한 사업비를 별도로 책정한 경우가 많으며, 불법 행위로 인해 발생한 과태료는 결국 조합원(조합가입자)이 납부한 부담금(또는 업무 추진비 등)에서 나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.

📖 조합가입계약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달라고 요구하세요.

- 조합가입계약서 내용에 대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 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조합 가입 시 「조합 가입 계약 설명확인서」 작성·교부 받으시기 바랍니다.

☞ 「조합 가입 계약 설명확인서」작성·교부 의무(2020. 7. 24. 시행)

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가입계약서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가입신청자에게 그 내용을 이해하였음을 확인받아야 하며, 이를 위반할 경우 「주택법」 제106조(과태료)제2항제3호에 따라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됨.

※ 최초 모집신고일이 **2020. 7. 24. 이후**인 경우만 해당됨.

제외 : (가칭)센텀우동지역주택조합, (가칭)해운대우동1지역주택조합

📖 조합 가입계약서 작성 전에 ‘잠시 멈춤’ 하세요!

○ 주택홍보관에 방문·상담 후 즉시 가입하기 보다는 주변 사람들과 의논하고 지역주택사업이 무엇인지 충분히 알아본 뒤에 가입하시기 바라며,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조합 가입자 본인에게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모집공고문, 조합가입 계약서, 조합규약 등을 꼼꼼하게 읽고 불리한 내용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

☞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이 중심이 되는 사업이며 탈퇴가 쉽지 않습니다. 탈퇴(조합원 자격상실 또는 개인적인 사정 등) 시 납부 비용 환급조건 등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

📖 조합 가입신청 30일 이내에는 청약 철회가 가능합니다.

○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는 가입비 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「청약철회 요청서」를 조합에 제출하고 접수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

※ 최초 모집신고일이 **2020. 12. 11. 이후**인 경우만 해당됨.

제외 : (가칭)센텀우동지역주택조합, (가칭)해운대우동1지역주택조합

조합원(조합가입자)은 조합운영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- 주택조합(추진위원회)은 **서류 및 관련 자료**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**15일 이내에**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**인터넷**과 **그 밖의 방법**을 병행하여 **공개**해야 합니다.

공개방법 : [인터넷 + 조합사무실(홍보관) 서류 열람 등]

공개대상 내용

- ❖ 조합규약
- ❖ 공동사업주체의 선정 및 주택조합이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와 체결한 협약서
- ❖ 설계자 등 용역업체 선정 계약서
- ❖ 조합총회 및 이사회, 대의원회 등의 의사록
- ❖ 사업시행계획서
- ❖ 해당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
- ❖ 회계감사보고서
- ❖ 분기별 사업실적보고서
- ❖ 업무대행자가 제출한 실적보고서
- ❖ 연간 자금운용 계획서
- ❖ 월별 자금 입출금 명세서
- ❖ 월별 공사진행 상황에 관한 서류
- ❖ 주택조합이 사업주체가 되어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의 분양신청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
- ❖ 전체 조합원별 분담금 납부내역
- ❖ 조합원별 추가 분담금 산출내역

 구체적인 사항은 「주택법」제12조(실적보고 및 관련 자료의 공개) 제2항 확인

※ 조합운영에 관한 자료를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공개하지 않은 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「주택법」 제102조 또는 제104조에 따라 고발 또는 벌금에 처함.

- 조합원은 주택조합사업 관련 자료를 열람·복사 요청할 수 있으며, 주택조합은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. 이 경우 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해야 합니다.

열람·복사 요청 가능 자료

(공개대상 자료 + 조합원 명부, 토지 확보 관련 자료)

- ❖ 조합규약
- ❖ 공동사업주체의 선정 및 주택조합이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와 체결한 협약서
- ❖ 설계자 등 용역업체 선정 계약서
- ❖ 조합총회 및 이사회, 대의원회 등의 의사록
- ❖ 사업시행계획서
- ❖ 해당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
- ❖ 회계감사보고서
- ❖ 분기별 사업실적보고서
- ❖ 업무대행자가 제출한 실적보고서
- ❖ 연간 자금운용 계획서
- ❖ 월별 자금 입출금 명세서
- ❖ 월별 공사진행 상황에 관한 서류
- ❖ 주택조합이 사업주체가 되어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의 분양신청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
- ❖ 전체 조합원별 분담금 납부내역
- ❖ 조합원별 추가 분담금 산출내역
- ❖ 조합원 명부
- ❖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 확보 비율 등 토지 확보 관련 자료

☞ 구체적인 사항은 「주택법」제12조(실적보고 및 관련 자료의 공개) 제3항 확인

※ 거짓의 사실이 포함된 자료를 열람·복사하여 주거나 조합원의 열람·복사 요청을 따르지 아니한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「주택법」 제102조 또는 제104조에 따라 고발 또는 벌금에 처함.

📖 지역주택 조합원은 자격요건을 유지해야 합니다.

☞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되려면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.

1	<p>‘조합설립인가 신청일’부터 조합주택의 ‘입주가능일’까지</p> <p>①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의 세대주 또는 ②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하여 주거전용면적 85m² 이하의 주택 1채(당첨자 및 이를 승계한 자를 포함)*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</p>
2	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부산·울산·경남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 한 사람
3	본인 또는 배우자가 같은 또는 다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거나 직장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닐 것

★ **‘세대주 자격’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계속 유지**해야 합니다.

★ **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* 전원이 무주택자이거나 1명에 한정하여 주거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 1채를 소유**할 수 있습니다.

※ 세대원 :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**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을 포함.**

주택수 판정 기준 중 ‘당첨자 및 이를 승계자’ 관련 주의사항

주택조합 조합원 자격판정 시 설립인가신청일 이후 **당첨자(일반분양주택의 당첨자 등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조제7호에 따른 당첨자를 말함)의 지위(전매받은 경우 포함)를 보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, 그 주택에 대한 분양계약 체결, 지위 전매 또는 입주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**하게 됩니다. (단, 분양주택에 당첨되었으나 **조합설립인가신청일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조합설립인가신청일 이전에 이를 전매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고 있지 않음**)

☞ 구체적인 사항은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21조(조합원의 자격) 확인

조합가입자 주의사항 요약

- ❖ 과대·과장광고에 주의해야 합니다.
 - 토지의 사용권원(=토지 동의율)을 부풀려 설명하는지 확인
 - 동·호수 배정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이후 가능함.
 - 분양가 확정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이후 가능함.
 - 시공사 선정은 조합이 설립되어 총회를 거쳐야 결정됨.
 - 사업과정에서 조합원 추가 부담금 발생할 수 있음.
- ❖ 모집공고문, 조합가입 계약서, 조합규약 등을 꼼꼼하게 읽고 불리한 내용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
- ❖ 조합 가입 후 탈퇴가 쉽지 않으며, 탈퇴 시 납부비용 환급조건 등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
- ❖ 조합가입계약서 내용을 설명 듣고, 「조합 가입 계약 설명확인서」를 작성·교부 받아야 합니다.
- ❖ 조합 가입신청 후 30일 이내에는 청약 철회가 가능합니다.
- ❖ 조합원(조합가입자)은 조합운영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 - 조합은 인터넷 및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자료 공개해야 함.
 - 조합원은 주택조합사업 관련 자료를 열람·복사 요청 가능함.
- ❖ 지역주택 조합원은 자격요건을 유지해야 합니다.
- ❖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조합 가입자 본인에게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
3 조합 및 모집주체(발기인 및 업무대행사)

- ※ 법령을 요약하여 작성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자세한 내용은 「주택법」 [법제처(<http://www.moleg.go.kr>)]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※ 「주택법」 은 이하 ‘법’, 「주택법 시행령」 은 이하 ‘영’, 「주택법 시행규칙」 은 이하 ‘규칙’ 이라 함.

📖 업무대행자의 실적보고서 제출

- 업무대행자는 사업 연도별로 분기마다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분기의 말일부터 20일 이내에 주택조합(또는 발기인)에 제출해야 합니다.

관련법령	법 제11조의2제4항 및 규칙 제7조의2제2	
벌칙조항	법 제104조	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업무대행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시행일	2020. 7. 24.	이 법은 공포(20. 1. 23.)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

📖 조합임원(또는 발기인)의 회계서류 보관 의무

- 주택조합의 임원(또는 발기인)은 계약금 등(해당 주택조합사업에 관한 모든 수입에 따른 금전)의 징수·보관·예치·집행 등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한 장부를 월별로 작성하여 그 증빙서류와 함께 주택조합 해산인가를 받는 날까지 보관해야 합니다.

(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거나 보관할 수 있음.)

관련법령	법 제14조의3제2항	
벌칙조항	법 제104조	제14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시행일	2020. 7. 24.	이 법은 공포(20. 1. 23.)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

📖 조합임원(또는 발기인)의 실적보고서 작성

- 주택조합의 임원(또는 발기인)은 실적보고서를 사업 연도별로 분기마다 해당 분기의 말일부터 30일 이내에 작성해야 합니다.

▶ 실적보고서 포함내용

- ① 조합원(주택조합 가입 신청자 포함) 모집 현황
- ②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 확보 현황
- ③ 주택조합사업에 필요한 관련 법령에 따른 신고, 승인 및 인·허가 등의 추진 현황
- ④ 설계자, 시공자 및 업무대행자 등과의 계약체결 현황
- ⑤ 수익 및 비용에 관한 사항
- ⑥ 주택건설공사의 진행 현황
- ⑦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

관련법령	법 제12조제1항 및 규칙 제11조제1항	
벌칙조항	법 제104조	실적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지 않고 작성한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시행일	2020. 7. 24.	이 법은 공포('20. 1. 23.)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

📖 조합임원(또는 발기인)의 연간 자금운용 계획 및 자금집행 실적 제출

- 주택조합의 임원(또는 발기인)은 '연간 자금운용 계획 및 자금 집행 실적'을 매년 2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.

▶ 제출내용

- ① 직전 연도의 자금운용 계획 및 자금 집행 실적에 관한 자료
- ② 직전 연도의 등록사업자의 선정 및 변경에 관한 서류
- ③ 직전 연도의 업무대행자의 선정 및 변경에 관한 서류
- ④ 직전 연도의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서류
- ⑤ 직전 연도 12. 31을 기준으로 토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의 확보 현황에 관한 자료

관련법령	법 제12조제4항 및 규칙 제11조제5항	
벌칙조항	법 제106조	제12조제4항에 따른 서류 및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시행일	2020. 6. 11.	이 법은 공포('19. 12. 10.)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

📖 조합원 모집광고 준수

○ 모집주체가 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 아래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며, 주택조합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조합원 모집광고를 시작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광고한 매체 및 기간을 표시하여 해당 광고를 게재해야 합니다.

▶ 광고에 **포함**되어야 하는 내용

- ① **“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을 위한 광고”**라는 문구
- ② **조합원의 자격기준**에 관한 내용
- ③ 주택건설대지의 **사용권원 및 소유권**을 확보한 비율
- ④ **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**
- ⑤ **조합원 모집 신고 수리일**
- ⑥ ‘①~⑤’의 **모든 내용을 포함**하여 광고해야 하며, 일반인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, 글씨크기는 9포인트 이상으로 **제목이 아닌 다른 내용보다 20퍼센트 이상 클 것.**

▶ 조합원 가입 권유 및 모집광고 시 **금지 행위**

- ① 조합주택의 공급방식, 조합원의 자격기준 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거나 누락하여 **제한 없이 조합에 가입**하거나 주택을 **공급**받을 수 있는 것으로 **오해**하게 하는 행위
- ②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**협약**이나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**사업계획승인을 통하여 확정될 수 있는 사항**을 사전에 **확정된 것처럼 오해**하게 하는 행위
- ③ 사업추진 과정에서 조합원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음에도 **주택 공급가격이 확정**된 것으로 **오해**하게 하는 행위
- ④ 주택건설대지의 **사용권원 및 소유권**을 확보한 비율을 사실과 **다르거나 불명확**하게 제공하는 행위
- ⑤ 조합사업의 내용을 **사실과 다르게 설명**하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실을 **은폐 또는 축소**하는 행위
- ⑥ **시공자**가 선정되지 않았음에도 **선정된 것으로 오해**하게 하는 행위

관련법령	법 제11조의5 및 영 제24조의4	
벌칙조항	법 제102조	제11조의5를 위반하여 조합원 가입을 권유하거나 조합원을 모집하는 광고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시행일	2020. 7. 24.	이 법은 공포(20. 1. 23.)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

📖 조합운영 관련 자료의 공개

○ 주택조합(추진위원회)은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해야 합니다.

▶ 공개방법 : 인터넷 + 그 밖의 방법

▶ 공개대상 내용

- ① 조합규약
- ② 공동사업주체의 선정 및 주택조합이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와 체결한 협약서
- ③ 설계자 등 용역업체 선정 계약서
- ④ 조합총회 및 이사회, 대의원회 등의 의사록
- ⑤ 사업시행계획서
- ⑥ 해당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
- ⑦ 회계감사보고서
- ⑧ 분기별 사업실적보고서
- ⑨ 업무대행자가 제출한 실적보고서
- ⑩ 연간 자금운용 계획서
- ⑪ 월별 자금 입출금 명세서
- ⑫ 월별 공사진행 상황에 관한 서류
- ⑬ 주택조합이 사업주체가 되어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의 분양신청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
- ⑭ 전체 조합원별 분담금 납부내역
- ⑮ 조합원별 추가 분담금 산출내역

관련법령	법 제12조제2항 및 영 제25조	
벌칙조항	법 제102조 법 제104조	- 제12조제2항에 따른 서류 및 관련 자료를 거짓으로 공개한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-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한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시행일	2020. 7. 24.	이 법은 공포(20. 1. 23.)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

📖 주택조합사업 관련 자료의 정보공개

-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원이 열람·복사 요청을 한 경우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 이 경우 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합니다.

▶ 공개대상 내용

- ① 조합규약
- ② 공동사업주체의 선정 및 주택조합이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와 체결한 협약서
- ③ 설계자 등 용역업체 선정 계약서
- ④ 조합총회 및 이사회, 대의원회 등의 의사록
- ⑤ 사업시행계획서
- ⑥ 해당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
- ⑦ 회계감사보고서
- ⑧ 분기별 사업실적보고서
- ⑨ 업무대행자가 제출한 실적보고서
- ⑩ 연간 자금운용 계획서
- ⑪ 월별 자금 입출금 명세서
- ⑫ 월별 공사진행 상황에 관한 서류
- ⑬ 주택조합이 사업주체가 되어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의 분양신청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
- ⑭ 전체 조합원별 분담금 납부내역
- ⑮ 조합원별 추가 분담금 산출내역
- ⑯ 조합원 명부
- ⑰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 확보 비율 등 토지 확보 관련 자료

관련법령	법 제12조제3항	
벌칙조항	법 제102조 법 제104조	- 제12조제3항에 따른 열람·복사 요청에 대하여 거짓의 사실이 포함된 자료를 열람·복사하여 준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-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조합원의 열람·복사 요청을 따르지 아니한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시행일	2020. 7. 24.	이 법은 공포(20. 1. 23.)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

📖 모집주체의 설명의무

○ 모집주체는 주택조합의 가입 신청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가입계약서에 포함된 사항을 설명하고 설명한 사항을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면으로 확인 받아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에게 「조합 가입 계약 설명 확인서」를 교부해야 하며, 그 사본을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.

▶ 설명의무 대상 내용(= 조합가입계약서 포함 내용)

- ① 주택조합의 사업개요
- ② 조합원의 자격기준
- ③ 분담금 등 각종 비용의 납부예정금액,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
- ④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을 확보한 면적 및 비율
- ⑤ 조합원 탈퇴 및 환급의 방법, 시기 및 절차
- ⑥ 주택조합 발기인과 임원의 성명, 주소, 연락처 및 보수에 관한 사항
- ⑦ 업무대행자가 선정된 경우 업무대행자의 성명, 주소, 연락처(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, 대표자의 성명, 법인의 주소 및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) 및 대행 수수료에 관한 사항
- ⑧ 사업비 명세 및 자금조달계획에 관한 사항
- ⑨ 사업비가 증액될 경우 조합원이 추가 분담금을 납부할 수 있다는 사항
- ⑩ 법 제11조의6에 따른 청약 철회 및 가입비등(법 제11조의6제1항에 따른 가입비등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예치·반환 등에 관한 사항

관련법령	법 제11조의4 및 규칙 제7조의5	
벌칙조항	법 제106조	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설명의무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확인 및 교부, 보관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시행일	2020. 7. 24.	법 시행 이후 최초로 모집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

📖 주택조합의 해산

-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**3년**이 되는 날까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 **해산 여부를 결정**해야 합니다.
 - ☞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로부터 **3개월이내 총회개최**
-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**2년**이 되는 날까지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총회 의결을 거쳐 **주택조합 사업의 종결 여부를 결정**하도록 해야 하며, 총회의 **결과**를 구청장에게 **통지**해야 합니다.
 - ☞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로부터 **3개월이내 총회개최**
- 총회를 소집하려는 주택조합의 임원 또는 발기인은 **총회가 개최되기 7일 전까지** 회의 목적, 안건,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조합원 또는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에게 **통지**해야 합니다.

관련법령	법 제14조의2, 영 제25조의2 및 규칙 제11조의2	
벌칙조항	법 제104조	제1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총회의 개최를 통지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시행일	2020. 7. 24.	① 이 법 시행 전에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였으나 이 법 시행일 현재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(법률 제14344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이 법 시행일 현재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)에는 제1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 법 시행일을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로 본다. ② 이 법 시행 전에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았으나 이 법 시행일 현재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제1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 법 시행일을 제11조제1항에 따른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날로 본다.

주택조합의 회계감사

- 주택조합은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, 그 감사결과를 관할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.
- ① 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날
- ②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(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닌 리모델링인 경우에는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말한다)을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날
- ③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임시 사용승인을 신청한 날

관련법령	법 제14조의3 제1항 및 영 제26조	
벌칙조항	법 제104조	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시행일	2016. 8. 12.	제2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(2016. 8. 12.) 이후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는 주택조합부터 적용한다.

3

주요 위반사례

1. 사업추진 단계
2. 조합(추진위원회) 운영 과정

부산시 북구 지역주택조합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례들로 ‘2022년 북구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’ 조사결과 및 자주 발생하는 민원(전화, 방문, 서면 등)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. 참고로 아래 위반사례는 「주택법」 위반으로 행정조치(고발, 시정명령, 행정지도 등)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.

1 사업추진 단계

■ 사례1. 조합원 모집신고 전 조합원을 사전에 모집한 ○○조합

○ 가칭. ○○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지역주택조합원 모집신고 전 토지의 사용승낙을 받는 과정에서 조합원 가입계약 신청 사항이 포함된 ‘지역주택조합 청약신청서’를 작성하여 조합원을 사전에 모집함.

☞ 「주택법」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구비서류를 갖춰 구청에 신고하고, 신고 수리를 득한 후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여야 함.

■ 사례2. 사전계약 혜택을 부여할 것처럼 홍보한 ○○조합

○ 가칭. ○○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지역주택조합원 모집신고 전 토지의 사용승낙을 받는 과정에서 ‘가입의향서’를 작성하고, 일정기간 내 토지 사용승낙서를 제출한 토지 소유자들만을 대상으로 사전 계약 혜택을 줄 것처럼 홍보함.

☞ 「주택법」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구비서류를 갖춰 구청에 신고하고, 신고 수리를 득한 후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여야 하므로 특정인만을 대상으로 별도 모집 기간을 둘 수 없음.

■ 사례3. 토지소유자를 협박한 ○○조합

○ 가칭. ○○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지역주택조합원 모집신고 전 토지의 사용승낙을 받는 과정에서 토지를 강제로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 쫓겨나기 전에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함.

☞ 「주택법」 제22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토지소유자에게 매도청구가 가능하며, 대지의 소유자와 매도청구하기 전에 3개월 이상 협의해야 함. 주택조합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면 토지소유권 100%(지구단위 계획 시 95%) 이상 확보해야하므로 모집신고 전 단계에서는 강제로 토지를 매수할 권한이 없음.

※ 구체적인 사항은 「주택법」 제22조(매도청구 등) 확인

2 조합(추진위원회) 운영 과정

■ 사례1. 조합가입 계약서에는 무보수... 실제로는 조합임원에게 3백만원의 보수를 지급한 ○○조합

○ ○○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구청에 제출한 가입계약서 및 주택조합 가입신청자와 작성한 가입계약서에는 조합임원의 보수를 무보수로 기재되어있으나, 회계서류 확인 결과, 조합임원의 관공비로 월 3백만원을 지급함.

☞ 「주택법」 제11조의3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3 제2항제1호에 따라 모집주체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신고 시 '임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는 조합가입 계약서를 제출토록 되어 있고, 모집신고 수리 후 관할 구청의 승인을 얻은 가입계약서로 주택조합 가입신청자와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토록 되어 있음.

■ 사례2. 조합원 모집광고 준수사항을 위반한 ○○조합들

- ○○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조합원 모집광고 시 광고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빼고 광고 시 금지하는 행위는 포함하여 광고함.

★ 조합원 모집 광고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

1. “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을 위한 광고”라는 문구
2. 조합원의 자격기준에 관한 내용
3.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을 확보한 비율
4.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
5. 조합원 모집 신고 수리일
6. 위(1~5까지)의 모든 정보를 일반인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, 글씨크기는 9포인트 이상, 제목이 아닌 다른 내용보다 20퍼센트 이상 크도록 내용 표기

★ 조합원 모집 광고 위반 사례

- 마지막 ○○만원 대
- 시세차익 ○억 이상
- 59m² : ○억○천만원
- 입주 시까지 ○천만원
- ○○건설 또는 ○○브랜드 아파트
- 아파트 분양
- 일반분양 전 회사보유분 선착순 모집
- 가전제품 풀옵션 무상제공

☞ 「주택법」 제11조의5을 위반하여 ‘평당 ○만원~ 또는 59m² ○억○천~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주택공급 가격이 확정된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, 제한 없이 조합에 가입하거나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는 행위나 특정 브랜드명을 사용하여 시공사가 선정되지 않았음에도 선정된 것처럼 오해하게 하는 행위 등을 함.

※ 구체적인 사항은 「주택법」 제11조의5 및 영 제24조의4 확인

■ 사례3.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자료를 인터넷에 공개하지 않은 ○○조합들

- ○○주택조합(추진위원회)의 임원(또는 발기인)은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자료를 인터넷을 통해 공개해야 하나, 이를 일부만 공개하거나 전부 공개하지 않음.

★ 조합원(조합가입자)에게 공개해야 하는 내용

- ▶ 공개시기 :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
- ▶ 공개방법 : 인터넷 + 그 밖의 방법
- ▶ 공개대상 내용
 - 조합규약
 - 공동사업주체의 선정 및 주택조합이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와 체결한 협약서
 - 설계자 등 용역업체 선정 계약서
 - 조합총회 및 이사회, 대의원회 등의 의사록
 - 사업시행계획서
 - 해당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
 - 회계감사보고서
 - 분기별 사업실적보고서
 - 업무대행자가 제출한 실적보고서
 - 연간 자금운용 계획서
 - 월별 자금 입출금 명세서
 - 월별 공사진행 상황에 관한 서류
 - 주택조합이 사업주체가 되어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의 분양신청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
 - 전체 조합원별 분담금 납부내역
 - 조합원별 추가 분담금 산출내역

※ 구체적인 사항은 「주택법」 제12조제2항 및 영 제25조 확인

■ 기타 위반사례

-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은 ○○지역주택조합 조합임원(또는 발기인)
-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○○지역주택조합의 업무대행사
- 「조합 가입 계약 설명 확인서」를 작성·교부하지 않은 ○○지역주택조합
- 월별 장부 작성하지 않은 ○○지역주택조합

4

주 택 법 주 요 사 항

- ※ 「주택법」은 이하 '법', 「주택법 시행령」은 이하 '령', 「주택법 시행규칙」은 이하 '규칙'이라 함.
- ※ 아래의 관련규정은 가칭.○○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에도 적용되는 사항이며, 자세한 내용은 「주택법」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항 목		관 련 규 정	비 고
법 제11조의3 조합원 모집신고	시행일 '17. 6. 3. 이전	▶ 신문광고 (공고일)	제102조(벌칙) 제11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조합원을 공개로 모집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.
	시행일 '17. 6. 3. 이후	▶ 시.군.구청장 신고 (신고일) ▶ 법 제11조의 3 신설(시행일 : '17. 6. 3.) ☞ 이 법 시행 이전에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한 경우 및 주택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일간 신문에 조합원 모집 공고를 하여 조합원을 모집한 경우는 종전 규정을 따름.	
	시행일 '20. 7. 24. 이후	▶ 50% 토지 사용권원 확보, 구청장 신고 ☞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조합원 모집신고 (변경 신고는 제외한다)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 ※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11조의3 확인	
법 제11조 조합설립 인가조건	시행일 '16. 1. 25. 이전	▶ 토지사용권원 확보 내용 없음	
	시행일 '16. 1. 25. 이후	▶ 80% 토지 사용권원 확보 ☞ 개정규정은 공포('15. 7. 24.)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※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11조 확인 ※ 개정 당시 제32조(주택조합의 설립 등) [법률 제13435호 2015. 7. 24.] (시행일 : '16. 1. 25.)	
	시행일 '20. 7. 24. 이후	▶ 80% 토지 사용권원확보+15% 토지 소유권확보 ☞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조합원 모집신고 (변경 신고는 제외한다)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	

항 목	관 련 규 정	비 고
<p>법 제11조의2 자금보관 신탁업자 대행 (시행일 : '20. 7. 24.)</p>	<p>▶ 주택조합 및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계약금 등 자금의 보관업무는 신탁업자에게 대행하도록 해야 함. ☞ 시행 이전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조합은 종전 규정 적용 ※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11조의2 확인</p>	<p>제106조(과태료) 제1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금의 보관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.</p>
<p>법 제11조의3 발기인 자격 (시행일 : '20. 7. 24.)</p>	<p>▶ 발기인에 대한 자격요건 강화 - 영 제24조의3(주택조합 발기인의 자격기준 등)에 따른 자격을 갖춰야 함. -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조합원 모집신고가 수리된 날 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보며, 주택조합의 가입 신청자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있음. ☞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조합원 모집신고 (변경 신고는 제외한다)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 ※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11조의3 확인</p>	
<p>법 제13조 조합발기인 또는 조합임원의 결격사유</p>	<p>시행일 '20. 7. 24. 이전</p> <p>▶ 조합임원의 결격사유 등 - 법 제1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. [법률 제14344호, 2016. 12. 2, 일부개정]</p> <p>시행일 '20. 7. 24. 이후</p> <p>▶ 조합발기인 및 조합임원의 결격사유 강화 - 법 제1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이 될 수 없다. ☞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조합원 모집신고 (변경 신고는 제외한다)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 ☞ 제13조제4항의 조합임원의 겸직금지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임되는 주택조합의 임원부터 적용 ※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13조 확인</p>	<p>제106조(과태료)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겸직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.</p>

항 목		관 련 규 정	비 고
<p>법 제14조의3 제2항 회계서류 보관 의무화 (시행일 : '20. 7. 24.)</p>		<p>▶ 주택조합의 임원 또는 발기인은 계약금 등의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하여 장부를 월별로 작성하여 그 증빙서류와 함께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 해산인가를 받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.</p> <p>☞ 시행일부터 적용</p>	<p>제104조(벌칙) 제14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보관하지 아니 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.</p>
<p>법 제11조의2 주택조합 업무대행</p>	<p>시행일 '17.6.3.이전</p>	<p>▶ 해당없음</p>	<p>제101조(벌칙) 제1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조합업무를 대행하게 한 주택 조합, 주택조합의 발기인 및 조합업무를 대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.</p> <p>제104조(벌칙) 제11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업무대행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.</p>
	<p>시행일 '17. 6. 3. 이후</p>	<p>▶ 법령 해당(업무대행자의 자격 : 등록업자 등) ☞ 제11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택조합 및 주택조합의 발기인이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 [법률 제14344호, 2016. 12. 2, 일부개정]</p>	
	<p>시행일 '20. 7. 24. 이후</p>	<p>▶ 법령에 해당+자본금 요건강화+추진실적 공개 ☞ 시행일부터 적용 ☞ 제11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택조합 및 주택 조합의 발기인이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부터 적용 ☞ 이 법 시행 이전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 조합에 대하여는 제11조의2제3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. ※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11조의2 확인 제11조의2제1항 : 업무대행자의 자격</p>	

항 목	관 련 규 정	비 고
<p>법 제11조의4 설명의무 (시행일 : '20. 7. 24.)</p>	<p>▶ 주택조합 가입신청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, 「주택조합 가입 계약 설명 확인서」를 교부해야 함. ☞ 법 시행 후 최초로 조합원 모집신고(변경 신고는 제외한다)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 ※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11조의2 확인</p>	<p>제106조(과태료)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설명의무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확인 및 교부, 보관 의무를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.</p>
<p>법 제11조의5 과장광고 제한 (시행일 : '20. 7. 24.)</p>	<p>▶ 모집광고 시 준수해야할 사항 규정 ☞ 시행일부터 적용 ※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11조의5 확인</p>	<p>제102조(벌칙) 제11조의5를 위반하여 조합원 가입을 권유하거나 조합원을 모집하는 광고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.</p>
<p>법 제12조 실적보고 및 관련 자료의 공개</p>	<p>법 제12조제1항 실적보고서작성 (시행일 : '20. 7. 24.)</p> <p>▶ 작성자 :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 ▶ 시 기 : 분기별 작성(분기 말일부터 30일 이내) ▶ 작성내용 - 조합원 모집 현황 - 사용권원 및 소유권 확보 비율 등 ☞ 시행일부터 적용 ※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12조제1항 확인</p>	<p>제104조(벌칙)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지 않고 작성한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.</p>
<p>연간자금 운용계획 (시행일 : '20. 6. 11.)</p>	<p>▶ 작성자 :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 ▶ 시 기 : 매년 2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 ▶ 내 용 : 연간자금운용 계획 및 자금 집행 실적 등 ☞ 개정규정(개정 : '19. 12. 10.)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※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12조제4항 확인</p>	<p>제106조(과태료) 제12조제4항에 따른 서류 및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.</p>

항 목		관 련 규 정	비 고
법 제12조 실적보고 및 관련 자료의 공개	인터넷 그 밖의 방법 공개 (시행일 : '14. 2. 7.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작성자 :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 ▶ 시 기 :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 ▶ 공개방법 : 인터넷 + 그 밖의 방법 ▶ 공개내용 : 전체 조합원별 분담금 납부내역 등 <p>☞ 개정규정은 공포('13. 8. 6.)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 <p>※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12조제2항 확인 ※ 개정 당시 제32조의2(관련자료의 공개) [법률 제12022호, 2013. 8. 6.] (시행일 : '14. 2. 7.)</p>	<p>제102조(벌칙) 제12조제2항에 따른 서류 및 관련 자료를 거짓으로 공개한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.</p> <p>제104조(벌칙)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한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.</p>
	정보공개 (시행일 : '16. 8. 12.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조합의 구성원에게 정보공개청구권을 부여 <p>☞ 시행일 : '16. 8. 12. (법률 제13805호, 2016. 1. 19, 전부개정)</p> <p>※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12조제3항 확인</p>	<p>제102조(벌칙) 제12조제3항에 따른 열람·복사 요청에 대하여 거짓의 사실이 포함된 자료를 열람·복사하여 준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.</p> <p>제104조(벌칙)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조합원의 열람·복사 요청을 따르지 아니한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.</p>

항 목	관 련 규 정	비 고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법 제14조의2 조합해산 여부 결정 (시행일 : '20. 7. 24.)</p>	<p>▶ 모집신고 후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을 못하거나, 조합설립 후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해산(사업종결)여부를 결정해야 함.</p> <p>☞ 이 법 시행 전에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였으나 이 법 시행일 현재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 시행일을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로 본다.</p> <p>☞ 시행 전에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았으나 이 법 시행일 현재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을 제11조제1항에 따른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날로 본다.</p> <p>※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14조의2 확인</p>	<p>제104조(벌칙) 제1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총회의 개최를 통지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.</p>

5

자주 묻는 질문

📖 현재 시점의 토지사용권원(=토지동의율) 및 소유권 확보현황을 구청에서 알 수 있나요?

☞ 아니요, 구청에서는 현재시점의 토지동의율 등은 알 수 없습니다.
구청에서는 모집신고, 모집 변경신고 및 조합설립인가 시점 기준의 토지동의율 등을 파악하고 있으며, 이는 우리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
☞ 다만, 주택조합원(또는 가입자)은 해당 주택조합(추진위원회)에 주택건설대지의 **사용권원 및 소유권 확보 비율** 등 토지 확보 관련 자료를 열람·복사 요청하여 확인 가능합니다.

○ 참고. 토지 사용권원 확보 자료 확인 방법

대 상	확인서류	기재내용	비 고
사용권원 + 소유권 확보	토지사용권원 (소유권) 총괄표	전체 대지의 지번, 면적, 및 소유자, 동의여부, 동의면적 등	
토지의 사용권원 (= 대지사용동의율)	토지사용동의서 (= 조합설립인가 동의서)	소유자 인적사항, 동의면적 동의일, 동의내용 동의받는 주체(조합명 등) 동의자 인감 또는 서명날인	
	토지등기사항 전부증명서 (토지등기부등본)		토지사용동의서의 소유자와 일치여부 확인
	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	대지사용동의서에 - 인감날인 시 인감증명서 - 서명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	토지사용동의서의 소유자와 일치여부 확인
토지의 소유권 확보	토지등기부등본	토지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조합인지 확인	

📖 토지의 사용권원이란 무엇인가요?

- ☞ 토지의 사용권원은 「주택법」에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. 쉽게 말하자면 토지 사용에 대한 동의율입니다. 토지 소유자가 토지의 사용을 허락하는 것으로 토지사용권원은 토지 소유권 확보와 다릅니다.

📖 모집신고 수리된 조합은 안정성이 있는 것 아닌가요?

- ☞ 주택법 개정(시행일 : 2020. 7. 24.)에 따라 주택조합 설립 이전 단계에서의 관리·감독이 강화되었으며,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(해당 주택건설대지의 50% 이상)하여 조합원 모집신고 후 사업주체가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으나, 개정 전 모집 신고한 조합은 제외되는 규정이 많고, 조합원 모집신고가 수리되었다는 것이 사업의 안정성을 담보하여 주는 것은 아닙니다.

📖 모집공고문이 구청 홈페이지에 게시되던데 구청에서 사업을 보증해주는 것 아닌가요?

- ☞ 주택법에 조합원 모집 시 지역주민이 널리 볼 수 있는 일간신문 및 관할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모집공고 게시토록 정하고 있어 구청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으로 구청에서 해당 사업을 보증해주는 것이 아닙니다.

📖 모집신고가 수리된 사업은 확정된 사업인가요?

- ☞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신고 수리가 사업계획의 확정은 아닙니다. 주택건설을 위해서는 조합원 모집과 별도로 조합설립인가(토지 사용권원 80% 이상, 토지소유권 확보 15% 이상), 토지확보 및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등의 후속 행정절차를 조합에서 진행하여야 합니다.

📖 지역주택조합 사업 성공 가능성 및 추진기간은?

- ☞ 토지 사용 권원 및 소유권의 미확보, 조합원 간의 분쟁 또는 조합 및 사업자간의 분쟁으로 사업 기간이 장기화 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 조합이 해산될 수도 있어 사업 성공가능성 및 사업추진 기간은 확정 지을 수 없습니다.

📖 조합설립동의를 작성해달라고 하는데 작성하면 주택조합에 가입되나요?

- ☞ 아니요, 조합설립동의를 지역주택 조합가입 계약서가 아닙니다.

주택조합 조합원모집신고 및 조합설립 시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해야 하며, 대부분의 지역주택조합(추진위원회)은 토지 소유자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사용을 허락하는 '토지사용승낙서' 또는 '조합설립 동의서'를 통해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.

📖 조합 탈퇴 시 전액 환불가능한가요?

- ☞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는 가입비 등을 예치한 날부터 **30일 이내에**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**청약을 철회**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「**청약철회요청서**」를 **조합에 제출**하고 접수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

※ **최초 모집신고일이 2020. 12. 11. 이후인 경우만 해당됨.**

제외 : (가칭)센텀우동지역주택조합, (가칭)해운대우동1지역주택조합

- ☞ 가입 신청 후 30일이 경과하였거나, 해당 법령을 적용받지 않는 조합(추진위원회)의 경우 조합원의 탈퇴 및 그에 따라 기 부담한 비용의 환급에 관한 사항은 해당 주택조합의 조합가입 계약서, 조합규약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되어야 할 사항으로 조합가입자와 조합(추진위원회) 간에 계약관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.

📖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이후에도 조합원은 부산울산경남에 계속 거주해야 하나요?

☞ 아닙니다.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이후에는 거주지역에 대한 별도의 제한이 없으므로 타지역으로 이전하여도 조합원 자격에 영향이 없습니다.

📖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신청일 이후 일반분양주택에 당첨되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지?

☞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(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의 날)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(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의 세대원을 포함) 전원이 주택을 소유(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조제7호에 따른 당첨자(당첨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를 포함)의 지위를 포함)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이거나,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하여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로서,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 온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.

☞ 따라서 **주택조합 조합원 자격판정 시 설립인가신청일 이후 당첨자(일반분양주택의 당첨자 등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조제7호에 따른 당첨자를 말함)의 지위(전매받은 경우 포함)를 보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, 그 주택에 대한 분양계약 체결, 지위 전매 또는 입주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**하게 됩니다. (단, 분양주택에 당첨되었으나 조합설립인가신청일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조합설립인가신청일 이전에 이를 전매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고 있지 않음)

6

해운대구 지역주택조합 현황

해운대구 지역주택조합 현황

(조합설립승인 및 조합원 모집신고 기준/기준일 : 2022. 10. 31.)

연번	조합명	사업예정지	업무대행사	모집 신고일 (접수일)	조합설립 인가일 (신청일)	사업계획 승인일	사업규모				토지사용권원(%)		비 고
							대지 면적(m ²)	층수 (지하/지상)	세대수	연면적	토지 사용 동의	소유권 확보	
1	동부산 지역주택조합	반송동 293-1 일원	(주)부동산 중개법인 에스와이	2019. 5. 31. (2019. 3. 18.)	2022. 3. 16. (2022. 2. 15.)	-	15,355.31	2/29	323	48,376.56	80.38	0	조합원 추가모집승인 (2022.4.11.)
2	(가칭)센텀우동 (센텀펜타뷰)	우동 1201 일원	-	2017. 3. 24. (부산일보 공고)	-	-	26,310	2/35	630	-	-	-	-
3	(가칭)해운대 우동1	우동 397-55 일원	-	2017. 5. 22. (경남일보 공고)	-	-	15,801	2/31	380	-	-	-	(우동7재개발 사전타당성검 토 신청접수)
4	(가칭)솔밭마을	중동 1615 일원	-	-	-	-	7,843	4/44	482	80,851	-	-	모집신고 절차 미이행
5	(가칭)센텀더힐	재송동 119 일원	-	-	-	-	7,881	2/20	157	-	-	-	모집신고 절차 미이행